

1. 홈페이지 및 현장 낚시금지 안내의 근거로 사용하는 조례·고시·관리 규정·지침·위수탁 관련 문서 중 적용 범위와 금지행위 관련 부분

1)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 제1호

제11조(행정지도)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 및 공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1. 낚시행위 및 유어행위

2. 수영·목욕 등 이와 유사한 행위

3. 야영행위 및 취사행위

4. 흡연행위 및 음주행위

5. 노숙행위 및 영업행위

6. 음식쓰레기 등 폐기물 투기행위 및 방뇨행위

7.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등 바퀴가 있는 동력 또는 무동력 장치의 이용행위 (다만, 장애인·유아·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장치이거나 청소·공사·보수 등 청계천 시설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8. 동물동반 출입행위(다만, 장애인을 보조하는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은 예외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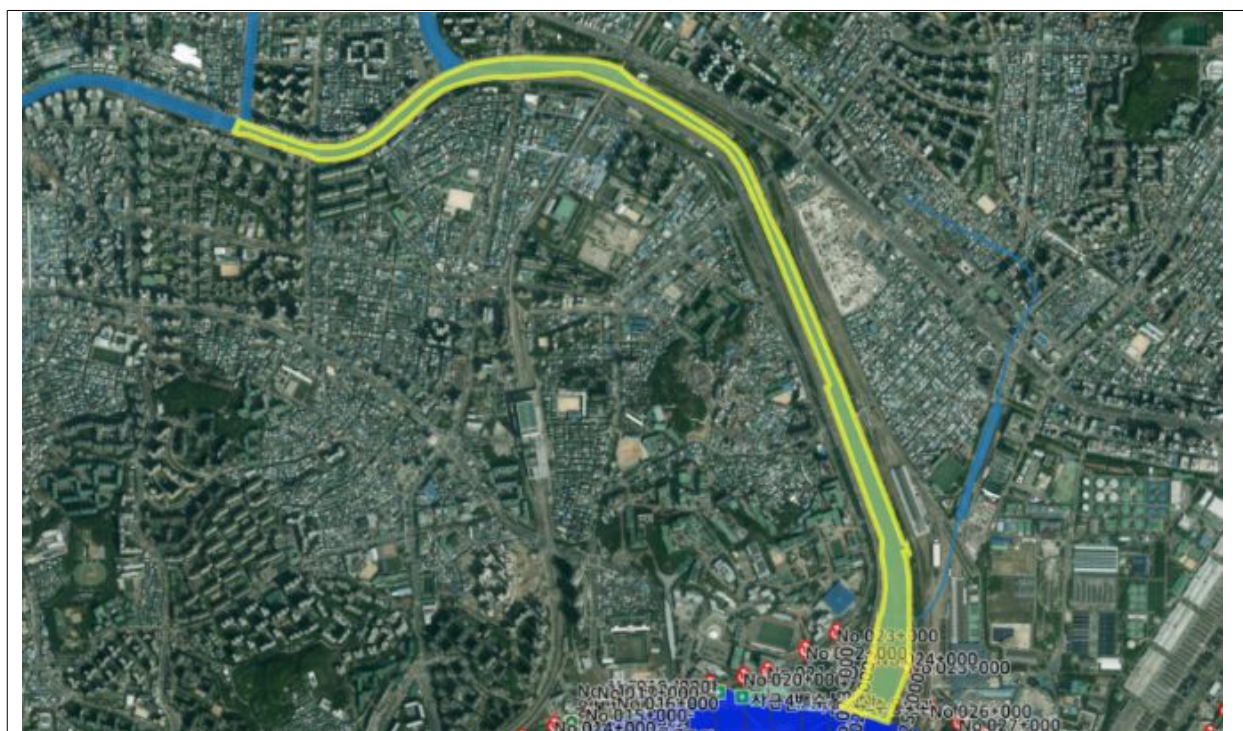
2) 하천법 제46조의2 및 하천법 제98조

제46조의2(금지구역등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행위를 금지하는 구역은 금지구역으로, 제2호에 따른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구역은 금지구역 또는 제한구역(이하 “금지구역등”이라 한다)으로 각각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2. 떡밥·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제98조(과태료) ② 제46조제7호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하거나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구역등에서 금지행위 또는 제한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단순 이용수칙·행정지도와 법정 금지구역 지정·과태료 처분을 구분할 수 있는 기존 집행 지침, 과태료 부과가 있다면 그 권한법적 근거가 기록된 문서

- 서울시설공단은 과태료 부과 권한이 없어 관련 집행 지침 및 관련 문서가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호제1호에 의거하여 부존재함

5. 현재 적용기간, 변경·해제 또는 예외 관련 고시·공문

- 지방하천 지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26호('03.10.30))

제 2516호	시	보	2003. 10. 30. (목)	제 2516호	시	보	2003. 10. 30. (목)																																											
2003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가. 결정 및 변경결정(일반주거지역의 종재분 지정) 취지 1) 그 동안 일반주거지역은 구릉지, 양호한 주택지, 간선도로변 등 입지특성과는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관리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저층주택지내 불출월 개발, 무분별한 고층과밀개발로 인한 도시경관·자연환경 훼손, 공공시설 부족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있음	2) 이러한 문제현상에 따라 지난 2001. 7. 1 전면 개정된 도시계획법시행령(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일반주거지역을 그 특성에 따라 제1종·제2종·제3종으로 세분·지정하도록 규정하여, 법령의 지정목적에 부합하고 지역특성과 현재의 개발상태 및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일반주거지역 중 세분 지정 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고시(마포구 일반주거지역의 종재분)	1. 하천의 지정현황 가. 명칭 : 봉재천(지명1,2급) 나. 구간 : ○지명1급 하천 : 기점 - 성북천 합류점 종점 - 중앙천 합류점 ○지명2급 하천 : 기점 - 종로구 석원동 168 종점 - 성북천 합류점	2. 하천정비기본계획 가. 수립의 목적 (1) 하천의 관리, 이용, 보존, 개발 및 하천환경 등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 분석 (2) 홍수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건설을 추진 나. 반영한 강수량 및 수자원 부존량																																															
<table border="1"> <tr> <th rowspan="2">구분</th><th>면적(㎡)</th><th>구상비(%)</th><th>비고</th></tr> <tr> <th>기점</th><th>변경</th><th>변경후</th></tr> <tr> <td>소계</td><td>11,694,126.0</td><td>-</td><td>11,694,126.0 100</td></tr> <tr> <td>일반주거지역</td><td>11,021,296.1</td><td>감</td><td>11,021,296.1 -</td></tr> <tr> <td>제1종일반주거지역</td><td>10,496.0</td><td>증</td><td>929,724.0 940,170.0 8.0</td></tr> <tr> <td>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td><td>-</td><td>증</td><td>5,253,097.0 5,253,097.0 44.9</td></tr> <tr> <td>제2종일반주거지역</td><td>18,703.9</td><td>증</td><td>2,073,009.1 2,091,713.0 17.9</td></tr> <tr> <td>제3종일반주거지역</td><td>643,689.0</td><td>증</td><td>2,785,486.0 3,409,166.0 29.2</td></tr> </table>		구분		면적(㎡)	구상비(%)	비고	기점	변경	변경후	소계	11,694,126.0	-	11,694,126.0 100	일반주거지역	11,021,296.1	감	11,021,296.1 -	제1종일반주거지역	10,496.0	증	929,724.0 940,170.0 8.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증	5,253,097.0 5,253,097.0 44.9	제2종일반주거지역	18,703.9	증	2,073,009.1 2,091,713.0 17.9	제3종일반주거지역	643,689.0	증	2,785,486.0 3,409,166.0 29.2	<table border="1"> <tr> <th rowspan="2">하천명</th><th rowspan="2">유역면적(㎢)</th><th rowspan="2">연평균강수량(mm)</th><th rowspan="2">수계면적(106㎡/년)</th><th>유출량(106㎡/년)</th><th>손실량(106㎡/년)</th></tr> <tr> <th>홍수량</th><th>정수량</th></tr> <tr> <td>정제천</td><td>50.96</td><td>1345.1</td><td>68.55</td><td>31.82</td><td>9.71</td><td>41.53</td><td>27.02</td></tr> </table>		하천명	유역면적(㎢)	연평균강수량(mm)	수계면적(106㎡/년)	유출량(106㎡/년)	손실량(106㎡/년)	홍수량	정수량	정제천	50.96	1345.1	68.55	31.82	9.71	41.53
구분	면적(㎡)		구상비(%)	비고																																														
	기점	변경	변경후																																															
소계	11,694,126.0	-	11,694,126.0 100																																															
일반주거지역	11,021,296.1	감	11,021,296.1 -																																															
제1종일반주거지역	10,496.0	증	929,724.0 940,170.0 8.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증	5,253,097.0 5,253,097.0 44.9																																															
제2종일반주거지역	18,703.9	증	2,073,009.1 2,091,713.0 17.9																																															
제3종일반주거지역	643,689.0	증	2,785,486.0 3,409,166.0 29.2																																															
하천명	유역면적(㎢)	연평균강수량(mm)	수계면적(106㎡/년)	유출량(106㎡/년)	손실량(106㎡/년)																																													
				홍수량	정수량																																													
정제천	50.96	1345.1	68.55	31.82	9.71	41.53	27.02																																											
다. 관제도면 : 생략(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및 마포구 도시관리과 비치한 도면과 같음) 라. 시민의 열람 권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2733-0743)와 마포구 도시관리과(☎ 330-3333)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26호 천계천하천정비기본계획 정제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3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다. 주요지점에서의 기본홍수량·제최홍수량·제최홍수량 및 계획하폭 <table border="1"> <tr> <th>하천명</th><th>지점</th><th>기본홍수량(㎡/sec)</th><th>제최홍수량(㎡/sec)</th><th>제최홍수량(m)</th><th>계획하폭(m)</th></tr> <tr> <td rowspan="6">정제천</td><td>하구</td><td>710</td><td>710</td><td>17.05</td><td>410</td></tr> <tr> <td>제2아파트교</td><td>710</td><td>710</td><td>17.05</td><td>136</td></tr> <tr> <td>장동천 합류점</td><td>710</td><td>710</td><td>17.05</td><td>83</td></tr> <tr> <td>성북천 합류점</td><td>457</td><td>457</td><td>17.05</td><td>71</td></tr> <tr> <td>성북가(홍익문로)</td><td>286</td><td>286</td><td>18.64</td><td>54</td></tr> <tr> <td>성북교</td><td>113</td><td>113</td><td>24.58</td><td>21</td></tr> </table>	하천명	지점	기본홍수량(㎡/sec)	제최홍수량(㎡/sec)	제최홍수량(m)	계획하폭(m)	정제천	하구	710	710	17.05	410	제2아파트교	710	710	17.05	136	장동천 합류점	710	710	17.05	83	성북천 합류점	457	457	17.05	71	성북가(홍익문로)	286	286	18.64	54	성북교	113	113	24.58	21	3. 하천정비기본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 본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서울특별시 건설기획과 지수과(☎ 3707-9951~2), 정제천하천수계본부 복원사업담당관(☎ 2171-2501~2)와 관할 자치구(하천관리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천명	지점	기본홍수량(㎡/sec)	제최홍수량(㎡/sec)	제최홍수량(m)	계획하폭(m)																																													
정제천	하구	710	710	17.05	410																																													
	제2아파트교	710	710	17.05	136																																													
	장동천 합류점	710	710	17.05	83																																													
	성북천 합류점	457	457	17.05	71																																													
	성북가(홍익문로)	286	286	18.64	54																																													
	성북교	113	113	24.58	21																																													
다. 관제도면 : 생략(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및 마포구 도시관리과 비치한 도면과 같음) 라. 시민의 열람 권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2733-0743)와 마포구 도시관리과(☎ 330-3333)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27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성북구일반주거지역종재분) 수도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 종재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률 제30조제6항 및 관																																																

- 변경·해제 또는 예외 관련 고시·공문은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제1호에 의거하여 부존재함